

2024년도 제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3. 19.(화요일), 11:0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성주(분과위원장), 김정숙, 안효질, 손수호,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2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박현주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안건 672건(안건번호 제2024-15157호~1582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15157호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영상)을 다시 전송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하여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15158호~15174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15175호~15178호는 □□□ 블로그,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건번호 제2024-15179호~15828호 게시물 1,162건은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성주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33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2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성주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A 위원: ◆◆◆◆◆에서 이런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차단이 안되는가?
- 김준근 선임: BJ 즉 개인들이 새벽시간에 이런 방송을 하는 것 자체는 차단하기 어려움. 보통 개인 방송국에는 심의대상 게시물 같이 방송내용을 게시물로 업로드하지 않음.
- A 위원: 게시자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해서 촬영을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의 본인 계정에서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저작권 침해 정보 등에 해당할 것임.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방송 ‘○○’ 이외에 영화 ‘◇◇◇◇◇◇◇◇’가 있는데 “○○” 로만 안전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박현주 전문위원: 행정 절차상 안전 제목만 그렇게 처리한 것이며, 관련 증거 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안전번호 제2024-15157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1515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15158호~1517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4-15158호~15174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D, E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4-15158호~1517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15175호~1517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있는 영상의 분량이 전체 분량인지, 아니면 상당한 분량을 업로드 한 것인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가?
- 김준근 선임: 채증 자료를 보시면 재생시간 12분 정도의 영상이 2개 게시되어 있음.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 보통 한 회차 분량이 25분 정도이며 이 경우 오프닝, 엔딩 부분을 삭제한 전체 분량이 게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A 위원: 전체 분량에서 일부만 올리거나 영리 목적의 블로그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결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4~15175호~15178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15175호~15178호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4-15179호~1582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

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 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더 퍼스트 슬램덩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15179호(“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2023.01.04.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620포인트에 판매중임.

(“가여운 것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15323호(“가여운 것들)는 2024.03.06.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180포인트에 판매중임.

(“아카데미의 천재칼잡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15792호(“아카데미의 천재칼잡이)는 2022.06.10.부터 연재중인 국내 웹소설 로 웹하드에서 50포인트에 판매중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4-15179호~1582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제2024-15179호~1582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4-15157호(순번 1번), 제2024-15158호~15174호(순번 2번~18번), 제2024~15175호~15178호(순번 19번~22번)는 가결하고, 제2024-15179호~15828호(순번 23번~672번)는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김성주 분과위원장이 제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3. 26.

분과위원장 김성주

위원 김정숙

위원 안효질

위원 손수호

위원 한승원